

검 토 보 고 서

2019년도 바이오산업육출연계획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병 준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8년 10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4일

3. 제안이유

201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 2,950백만원

○ 필요성

- 오송첨복단지 활성화 및 재단의 조기 자립화를 위하여 재단 정착기 까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필요
- 의료 및 바이오 연구개발기관에 R&D 사업비를 지원, 재단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통해 바이오산업 활성화에 기여

○ 근거법령

- 충북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충청북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 및 지원 조례

② 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 : 350백만원

○ 필요성

- 4차 신산업,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바이오 특화인력을 양성하여
충북 바이오산업의 창조적 도약 도모

○ 근거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③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 200백만원

○ 필요성

- 오송바이오밸리 조기 완료를 위해서는 기업·기관 유치는 물론 바이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
- 바이오 벤처기업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충청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업사업으로 추진

○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④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출연 : 3,595백만원

○ 필요성

-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2002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후 엑스포 성과를 통해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존치된 기관으로 충청도도의 각종 국제 바이오행사 및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바이오 메디컬 허브 충북브랜드 강화’에 크게 기여

○ 근거법령

-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지원 조례
- 충청북도 화장품산업 육성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5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 787백만원

○ 필요성

- 바이오세라믹 소재산업 육성 체계를 위한 산자부 공모사업 대응사업
 - 1단계 : 융합바이오세라믹 소재센터 건립('15~'19)
 - 2단계 : 바이오세라믹 안전성·유효성 평가센터 구축('16~'20)
 - 3단계 : 융합바이오세라믹 테크노베이터 구축('19~'23)
- 고령화사회와 함께 융합바이오세라믹 분야(조직재생, 조기진단, 뷰티케어 등)에 대한 수요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성장 동력 산업 육성 필요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019년도 바이오산업국 출연계획안>

연번	실과명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계		5개 기관	12개 사업	7,882
1	바이오 정책과	오송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	2,950
2	바이오 정책과	충북산학 융합본부	차세대 미래 유망산업 연구개발자금 지원	300
			기업인력양성 일학습병행사업 지원	50
3	바이오 정책과	충청북도 창조경제 혁신센터	바이오벤처기업 성장프로그램 운영 지원	200
4	바이오 정책과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BIO KOREA 개최	365
			Bio Festival 개최	180
			2019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2,800
	화장품 전시홍보 판매관 운영		50	
	화장품 기초피부연구소 운영		200	
5	바이오 산업과	한국세라믹 기술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200
			바이오세라믹 유효성·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362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225

5. 검토의견

가. 출연 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의결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됨

나. 2019년 바이오산업육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5개 기관 78억 8,200만원으로, 금번 계획안은 출연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여부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것임

다. 다만, 도비를 출연하면서 우리도가 얻은 성과는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됨